

2025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농식품 산업체 및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공고개요

가. 사업명 : 2025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나.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총 100백만원, 1과제

다. 공고 및 접수기간 : '25.10.13.(월) ~ '25.10.27.(월) 16:00까지

라.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 지원

* 품질·성능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마. 사업기간(총 2년) : 공정고도화기간 + 성과창출기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7.12.31.

※ 공정고도화기간 :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설비도입 기간

※ 성과창출기간 : 지원제품의 매출성과를 내는 기간

바.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¹⁾의 기술²⁾을 이전받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거래 중개를 받은 기술에 한함)

2) 특허(출원/등록)에 한함

※ 계약체결일 및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접수 마감일(2025.10.27.) 이전
이어야 하며 실시기간 종료일은 과제접수 마감일 이후여야 함

※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모든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야 함

※ 공정고도화를 할 제품의 매출실적('22년~'24년)을 제출해야 함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지원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투자기업이 있을 경우 투자협약서 및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제출(최근 2개년)

※ 투자기업이란 양산화공정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진원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에 자금을 투자하는 영리기업, 투자사, 투자조합 등을 말함

※ 투자기업은 주관기관(신청기업)에서 직접 섭외하여야 함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 투자기업 투자금이 사업비 통장으로 선입금 된 후, 정부출연금과 매칭되어야
사업비 개시가 가능함(11월 중)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사이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투자
기업으로 참여 불가*

* 투자기업·주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

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①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신청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관리규칙 내역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와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과제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예외로 함
-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최근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 업체의 경우 제외
- ④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중 1개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불가
- ⑥ 동일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⑦ 접수마감일 기준 동일 사업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⑧ 동일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제품·상품으로 신청한 경우

*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사업

A유형

투자기업 참여형

* 매칭펀드(정부출연금+투자기업 투자금) + 주관기관 부담금

○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67% 이내(1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3% 이상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10% 이상을 현금 부담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총 지원금(매칭펀드)			주관기관 부담금		
		정부	투자기업	소계	현금	현물	소계
금 액	200	100.0 (66.7)	50.0 (33.3)	150 (100.0)	5 (10.0)	45 (90.0)	50 (100.0)
구성비(%)	100.0	50.0	25.0	75.0	2.5	22.5	25.0

B유형

기업 단독형

*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부담금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기관 부담금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주관기관 부담금 중 75% 이상을 현금 부담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부담금		
		정부	소계	현금	현물	소계
금 액	200	100.0 (100.0)	100.0 (100.0)	75.0 (75.0)	25.0 (25.0)	100.0 (100.0)
구성비(%)	100.0	50.0	50.0	75.0	25.0	50.0

아. 지원범위

- 생산·판매중인 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고도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기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제조공정의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판매중인 제품의 품질신뢰성 확보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정고도화(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리드타임 단축 등)
 - 공정고도화를 통해 개선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비용(회의비, 홍보비, 출장비, 수수료, 마케팅비 등)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고도화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담금(투자기업 투자금 미포함)의 50% 이내 현금·현물 계상 ex) 민간부담금 1억원일 경우 인건비(현금+현물)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 인건비의 현금계상은 신규채용*의 경우만 가능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의 50% 이내에서만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2차년도 사업종료일 이내에 신규채용한 자
직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공정고도화를 위한 설비 : 직접비(현금)의 80%이상 사용해야함(관련 부대시설 포함) - 재료비 : 직접비(현금)의 5% 이내 ○ 사업활동비 : 직접비(현금)의 10% 이내(마케팅비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비 1,000천원 필수 계상 - 공정개선컨설팅 : 컨설팅비 5,000천원 필수 계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출장비, 수수료 등

자. 우대 및 감점사항

○ 우대가점

* 가장 높은 1개만 가점 인정

연번	우대 사항	확인	가점												
①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종합평점 90점 이상)등급으로 기재된 최종평가 결과표 * '21년 참여업체부터 해당	2점												
②	최근 5년 이내 농촌진흥청장이 수여한 표창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	수상기업명 또는 대표명이 기입된 농촌진흥청장 표창	2점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1점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한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인증서	1점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⑥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매출 성과등급 * 농진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p>정부출연금 대비 과제관련 매출 성과 ※ 성과등급 지수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된 제품 매출액(백만원) (조사기간 누적매출) ÷ 정부출연금(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등급</th> <th>성과등급 지수</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10점 이상</td> <td>3</td> </tr> <tr> <td>B</td> <td>5점 이상 ~ 10점 미만</td> <td>2</td> </tr> <tr> <td>C</td> <td>3점 이상 ~ 5점 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 이상 ~ 10점 미만	2	C	3점 이상 ~ 5점 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 이상 ~ 10점 미만	2													
C	3점 이상 ~ 5점 미만	1													
⑦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매출 성과등급 * 농진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p>정부출연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수 ※ 성과등급 지수 = 신규 일자리창출수 × 10억원 ÷ 정부출연금(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등급</th> <th>성과등급 지수</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100점 이상</td> <td>3</td> </tr> <tr> <td>B</td> <td>50점 이상 ~ 100점 미만</td> <td>2</td> </tr> <tr> <td>C</td> <td>30점 이상 ~ 50점 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p>* 지원 당해연도 실적이며, 취업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p>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 이상 ~ 100점 미만	2	C	30점 이상 ~ 50점 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 이상 ~ 100점 미만	2													
C	30점 이상 ~ 50점 미만	1													

○ 감점사항

* 합산 최대 3점까지만 감점 적용

연번	감점 사항	감점
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국가사업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과제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3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동사업 또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중단, 실패·극히불량으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동사업 또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에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과제책임자나 기관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④	동사업 또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성과조사 시 미응답 또는 조사거부	3점
⑤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체결된 국유특허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산서 제출 후 기술실시료가 발생 하였을 때 기술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점
⑥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체결된 국유특허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산서 및 미실시 사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2점
⑦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미흡' 이하 과제인 경우	1점

2.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제출서류를 연번에 맞춰 서류별로 구분하여 제출

-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접수(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 제외)
- 파일명(예시) : 1_업체명_사업신청서 / 2_업체명_사업계획서

<접수처>

이메일 접수 : factmin@koat.or.kr

※ 접수마감일('25.10.27. 월요일 16시) 접수 분 까지만 인정

※ 내부보안 상 이메일 발송 시 네이버나 다음 메일 사용 요청

< 제출서류 >

번호	제출서류	비고	양식
1	○ 사업신청서	필수	서식1
2	○ 사업계획서	필수	서식2
21	○ 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필수	서식3
22	○ 기술이전제품 매출 실적 확인서	필수	서식4
3	○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필수	서식5
4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필수	-
5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필수	-
6	○ 주관기관 최근2년 재무제표*	필수	
7	○ 투자기업 협약서 및 최근2년 재무제표	해당 시 제출	서식6
8	○ 공정고도화 설비구축 예정지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
9	○ 기술이전 계약서 * 동일기술 연장계약 시 계약건별 계약서 제출	필수	
10	○ 기술 이전 제품 제조 및 판매 증빙 서류	필수	
11	○ 우대가점 증빙서류 * 해당 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발급 요청	해당 시 제출	

* 재무제표의 경우 전년도 재무제표 미결산시 결산 완료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제출(단, 설립일이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재무제표만 제출)

3. 사업선정 절차

가. 평가기준

- 사업기획 목적과의 부합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사전적격성검토 (’25.10.27.~10.30.)	신청서류에 의한 적격성 검토	농진원
1차 서면평가 (’25.11.4.)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함(필요시 적격성검토로 대체), 단 지원규모의 3배수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함	
2차 대면평가 (’25.11.11.)	대면평가 (1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현장평가 대상으로 함, 단 지원규모의 2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함	
3차 현장평가 (’25.11.14.~11.19.)	현장평가 (2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함	
과제선정 및 협약 (’25. 11월 중)	전문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확정	
	* 종합평점과 정책방향, 예산규모 등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협약 대상 과제 및 차순위 예비후보 과제선정	

※ 평가 일정은 대내·외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종합평점 산정 후 동점자 발생 시 현장 → 대면 → 서면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4. 행정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참여제한자는 사업응모 불가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 책임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에 소속되어야 함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소속여부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발표평가 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접수 마감일 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규로 기술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3주 내외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할 것

※ 정산 진행중인 재계약 과제는 과제협약시점까지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계약시 최종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바. 사업책임자·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평가일정
미공지 등 평가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사.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필수 제출 사항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또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서류)이 청구되므로 신청 기관은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지원팀	063-919-1362	factmin@koat.or.kr

[서식1] 사업신청서	1
[서식2] 사업계획서	2
[서식3] 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15
[서식4]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 확인서	17
[서식5]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18
[서식6] 투자기업 투자협약서	19
[별 첨1] 공고사업 평가방법(배점표)	20
[별 첨2] 우대가점 해당표	24

【서식 1】사업신청서

2025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기술명칭	예) 자동운전 농기계(국립농업과학원)						
		권리번호	출원번호:10-2009-00000000(등록번호:10-0000000)						
		실시계약	20△△. X. X ~ 20△△. X. X						
		개발제품명							
주관과제명	자동운전 농기계의 생산성 20%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개발제품 매출액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기업 총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기술이전제품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신청자	기본정보	사업자(법인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과제책임자	주생산품				업태/업종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실무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상시인력 (2024년말 기준)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E-mail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7.12.31. (약 24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	사업유형	A유형(), B유형() *A유형: 투자기업 有, B유형: 투자기업 無							
	정부 출연금	민간(주관기관)부담금			민간(투자기업)부담금			계	
		협금	현물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	(%)			(%)			100%	
투자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책임자명/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				
<p>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선정 과정에서 지원 중복성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00월 00일</p> <p style="text-align: right;">과제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p>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 2】사업계획서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계획서

(주관과제명 :)

(제품명 :)

1. 과제 개요

1-1. 매출목표

연차	매출목표	가중치(%)
1차년(공정고도화기간)	협약준비 및 체결	
2차년(공정고도화기간)	000백만원	80
3차년(성과창출기간)	000백만원	80
합계	000백만원	

* 매출목표(사업관련 지원제품 매출목표,공급가액 기준)의 연차별 '세부목표'에 따른 '목표치'는

미달성시 사유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제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짐으로 신중히 작성할 것

** 2차년~3차년 목표치의 '합계'는 그 값이 필히 정부출연금의 3배수 이상 값이 나오도록 설정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매출목표 미달 시 매출성과 인정 기간 1년 연장('28.12.까지)

1-2. 과제목표

세부목표	목표치	증빙방법	가중치(%)	
1차년도	협약준비 및 체결			
2차년도	○ 홈쇼핑 입점	홈쇼핑 2곳 이상 입점	계약서	5
	○ 신규거래처 확보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계약서, 세금계산서	5
	○ HACCP 인증	주관기관 생산시설 HACCP 인증	인증서	10
3차년도	○ 신규공장 설립	신규공장 건설	공장등록증명서	10
	○ 나라장터등록	지원제품 나라장터 등록	등록확인서	10

* 과제목표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측정이 가능한 세부목표를 연차별로 설정

** 각 연차별 사업목표 가중치의 합계는 100%(연차별 매출목표 80% + 연차별 과제목표 20%)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1-3. 제품소개

제품사진 첨부		
제품명		

1-4.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과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2-1. 기술적 측면

- 이전기술의 평가, 제품개발을 위한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역할,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본 과제를 위한 추가 필요 기술 등

-

2-2. 시장성 측면

- 대상제품 관련 시장규모 및 시장전망, 주요 경쟁사, 대상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 및 역할 등

-

2-3. 사업적 측면

- 과제의 효과(매출증대, 비용절감, 고용확대, 제품품질제고, 불량률 감소 등)
- 본 과제가 주관기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상제품을 활용한 중장기 사업전략 등

-

2-4. 사회적 측면

-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목표

-

3-1. 이전기술의 활용도

※ 과제 대상제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이전 기술의 활용 내역 및 기술의 기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

3-2. 대상제품의 개요

※ 대상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기술이전제품 개요 및 공정고도화 내용 작성

○

-

3-3. 과제 필요성

※ 대상제품의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4. 개발제품(기술)의 국내외 시장 규모 및 현황

4-1.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25년)	예상 시장규모(2026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4-2. 국내·외 주요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①			
②			
③			

5. 사업화 전략 및 방안

5-1. 대상제품(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5-1-1. 주요 핵심 기술 및 차별화 전략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및 제품판매·사업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명기

○

-

5-1-2. 제품개발 및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품질개선·제품개발 계획

※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이나 사업 진행 중 신제품 개발 시 계획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

-

□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신뢰성 (Reliability)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성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공인된 전문 시험기관을 통한 지원제품의 성능시험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

-

□ 제품 및 공정고도화 설비도입 계획

○

-

5-1-3. 생산 및 매출 확보 계획

※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계획, 공정개선 이후의 투자, 마케팅, 판매 등 생산 및 판로확보 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제품 생산계획

○

-

□ 판로 및 매출확보 계획

○

-

5-2. 과제 추진 이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예상 현황

(단위 : 천원)

판매처	국가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 ※ 공정·품질개선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5-3. 사업화를 위한 후속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투자내용					
투자금액(백만원)					

- ※ 사업 결과물의 양산, 마케팅, 공정고도화 등 주관기관에서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인 투입이 예상 되는 금액의 연간 총액을 기재

6. 수행기관 및 기관별 업무분장

6-1. 수행기관 정보

구 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투 자 기 업 (해당 시)			

6-2.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제품개발 비중(%)
주관기관		
투자기업		
총 계		100%

- ※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요망
- ※ 제품개발 비중이란 전체 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7. 연차별 과제성과 평가지표

7-1. 연차별 과제 목표

세부목표	목표치	증빙방법	가중치(%)	
1차년도	협약준비 및 체결			
2차년도	○ 신규설비 도입	동결건조기 도입	세금계산서	5
	○ 신규거래처 확보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계약서, 세금계산서	5
	○ HACCP 인증	주관기관 생산시설 HACCP 인증	인증서	10
3차년도	○ 신규공장 설립	신규공장 건설	공장등록증명서	10
	○ 나라장터등록	지원제품 나라장터 등록	등록확인서	10

- *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방법은 공인기관을 통한 측정 및 객관적 자료로 증빙

8. 세부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연차	세부 과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투자기업/ 위탁 등)	과제수행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협약준비 및 체결														
2차 년도	1. 예)제품 납품														
	2. 예)제품평가회 및 보완														
	3. 예)과제성과 측정														
	4. 예)추가기술도입 or 보완														
	:														
3차 년도	1. 예)설비보완 또는 추가														
	2. 예)신규 시장진입 전략수립														
	3. 예)과제성과 정리														
	4. 예)최종보고서 작성														
	:														
	:														

9. 과제수행 시 예상되는 효과

구 분	과제 수행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비고
제품매출액(백만원)	-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		
	수 출	-		
	계	-		
고용 창출(명)	-			

10. 관련 시설·장비 보유내역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보유 시설· 장비	자사 보유					(주)○○○○ (주관기관)	
	공동 장비 활용						

11. 참여인력

11-1.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이메일			

(2) 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3) 경력

연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고
부터	까지			

11-2. 참여인력 현황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과제참여율(%)	정부사업총참여율(%)	연봉총액(천원)
				학교	전공	학위				
주관기관				가나	전자	석사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o	50%	-	24,000

12. 사업비 내역

12-1.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연도	인 건 비		직접개발비		사업활동비		합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2026								
합계								

13. 정부 지원사업 참여실적(제품개발 및 공정고도화)

13-1.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수행기간 (시작-종료일)	정부 출연금 (백만원)	참여형태 (주관/공동/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4						

13-2. 이미 개발하였거나 판매 중인 제품 (개발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판매처
1			
2			
3			
4			

14. 기업경영현황표

구 분		업 체 명	OOOOO(주) (2024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외감)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주관기관	
	현금	현물
인건비		
직접개발비		
사업활동비		
합계		

2.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2-1.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연도	인력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A)	과제참여기간(B)	참여율(%) (C)	합 계 (A×B×C)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2026	기존 인력	홍길동	과제책임자	3,500	12개월	30	-	9,000	9,000	현물
		김철수	과장	3,000	12개월	10	-	3,000	3,000	현물
		박상철	사원	2,000	12개월	10	-	2,000	2,000	현물
	신규 인력	김영희	사원	2,500	12개월	30	6,000	-	6,000	현금
		소 계						6,000	14,000	20,000
합계							12,000	28,000	40,000	

※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 과제참여기간(B) × 참여율(C)

※ 인건비는 민간부담금(투자기업 투자금 미포함)의 50% 이내 현금·현물 계상 가능,

단 인력별 현금 또는 현물을 선택하여야 함

※ 인건비 현금계상은 신규채용*의 경우만 가능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의 50% 이내에서만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사업종료일 이내에 신규채용한 자

2-2. 직접비 소요명세

연도	구분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2026	직접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소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사업활동비									
		공정개선컨설팅	-	식	1	5,000	5,000			
		회계감사비	보고서	식	1	1,000	1,000			
	소계	천원								
	합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총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 현물의 경우 설비(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구입분만 인정)는 구입가격의 20%, 재료는 100% 계상 가능

※ 직접개발비

- 제품·공정고도화를 위한 설비
: 직접비(현금)의 80%이상 사용해야함(관련 부대시설 포함)
- 재료비, 외주가공비용 : 직접비(현금)의 5% 이내

※ 사업활동비 : 직접비(현금)의 10% 이내(마케팅비용 포함)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비 1,000천원 필수 계상
- 공정개선컨설팅 : 컨설팅비 5,000천원 필수 계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출장비, 수수료 등

※ 사업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 가능

【서식 3】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 * 공급가액 기준 1천만원 이상의 공정고도화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
- * 1천만원 이상의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아래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 *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 비교견적서를 제시해야하며, 미제시 할 경우 승인이 불허될 수 있음

1. 설비 개요

*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비고
도입 시설·장비명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가격(예상)	천원(또는 달러)	
취득방법	[내/외자 구매],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으로 기재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설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 .3.31 입찰 : ~20 .5.31 계약 및 입고 : ~20 .7.31 설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 .8.31	
계약방법 및 절차	설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작성요령
<p><input type="checkbox"/> 도입장비명 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②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③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p>*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사업계획서에 장비사양과 구매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비에서는 부가세집행은 불가함)

※ 견적서(2곳 이상), 공정도 등을 반드시 첨부

2. 도입 내용 및 필요성

1) 도입 필요성 및 적절성(상세기재 요망)

○ 설비 도입의 필요성(목적, 내용)

-

2) 용도, 주요 사양 (상세기재 요망)

○ 설비 용도

-

3) 도입 효과 (해당 설비 도입 후 기존 보유 장비와 연계한 공정개선 효과 상세 기재)

○

-

○ 설비 도입 전·후 공정도(필수)

-

4) 연 평균 가동률(기술이전 제품 생산 계획에 기초한 가동률 상세 기재)

* (연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하되, 연 평균가동률은 최대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연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

*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5) 견적서(2곳 이상)

【서식 4】기술이전 제품 매출 실적 확인서

기술이전제품 매출 실적 확인서

사 업 명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주관과제명	자동운전 농기계의 생산성 20%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제 품 명				
특허기술명 (특허번호)	자동운전 농기계(국립농업과학원) 출원번호:10-2009-00000000(등록번호:10-0000000)			
매출실적 (단위 : 천원)	Y-3년	Y-2년	Y-1년	합계

* 기준년도(Y)는 공정고도화 사업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함

** 첨부서류

- 1) 기술이전 정산서 또는 농업공공기술 진흥사업·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최종보고서(매출액증빙)
*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해 세금계산서로 제출
- 2) 기술이전제품 판매 관련 인증 및 증빙서류(ex) 품목제조보고서, 유기농업자재공시 등)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에서 개발한 본 사업 기술이전제품의 과거 매출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고, 그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시제품 매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실적확인서와 증빙서류 상 금액 일치해야함)

【서식 6】투자기업 투자협약서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투자협약서

□ 주관과제명 : 자동운전 농기계의 생산성 20%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 주관기관명 :

□ 투자기업명 :

□ 투자금액 :

투자기업은 주관기관과의 동반성장 관계를 촉진하며, 기술이전제품의 공정고도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사업에 참여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

1. (사업신청) 주관기관이 제안한 기술사업화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2. (사업관리) 과제의 성공적인 제품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과제를 제안한 주관기관의 관리 및 점검 등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3. (투자금액) 투자기업은 투자금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협력·지원)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 및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시험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한다.
5.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간인 3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한다.
6.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 (인)

※ 첨부파일 : 투자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1) 공정고도화 사업 평가방법 (배점표)

1.사전검토기준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사전검토기준	
구분	검토항목
1.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 보유 여부 등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 등
2.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공정고도화 사업,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공공기술진흥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3.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도 여부 ■ 부채비율 1,000%이상 또는 최근 회계연도 기준 자본전액잠식 여부
4. 신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 된 국가 사업과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기술이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2. 서면평가기준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서면평가기준

구준	평가항목
1. 공정고도화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2.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시설 보유 및 확보방안 ■ 사업비 규모 적정성 및 집행의 합리성
3. 실용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결과의 산업화 및 파급효과 ■ 기술이전제품의 생산 및 유통판매 전략

3. 대면평가기준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대면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1. 과제 목표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목표의 타당성 및 난이도 ■ 제품품질 개선 및 공정개선 가능성
2. 과제수행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주체의 능력(책임자 역량, 인력, 시설 등)
3. 과제 수행 과정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방법의 적정성 ■ 설비구축 계획의 적정성
4.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시장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시장규모
6.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구조 및 확대 가능성
7. 사업 성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의 성장가능성

4. 현장평가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현장평가기준

	확인사항	적합여부	비고(부합시 사유 등 확인사항)
필수 확인사항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검토)	적합() 부적합()	
	설비 ·재료 보유여부	적합() 부적합()	
	참여인력 근무여부(4대 보험)	적합() 부적합()	
	생산시설 공간 확보여부	적합() 부적합()	
	사업대상 시제품 보유 여부	적합() 부적합()	

구분	평가항목
1. 경영자 역량 및 준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 및 과제 책임자의 전문지식 ■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 이해도
2. 시장진입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시장경쟁력
3. 제품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설비의 필요성, 적정성 ■ 설비도입을 통한 공정개선 가능성
4. 제품 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및 생산공간 확보
5. 판로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품의 판로확보 계획

평가 의견	
----------	--

(별첨2) 우대가점 해당표

우대가점 해당표

□ 우대가점 *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구분	반영항목	가점	해당여부 (O/X)												
최근 5년 이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또는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종합평점 90점 이상)등급으로 기재된 최종평가 결과표 * '21년 참여업체부터 해당	2점													
최근 5년 이내 농촌진흥청장이 수여한 표창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	수상기업명 또는 대표명이 기입된 농촌진흥청장 표창	2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한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경영혁신형 농산업체(MAIN-BIZ) 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최근 5년 이내 농업기술상용화 지원 매출 성과등급	<p>*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p> <p>정부출연금 대비 과제관련 매출 성과 ※ 성과등급 지수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된 제품 매출액(백만원) (조사기간 누적매출) ÷ 정부출연금(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등급</th> <th>성과등급 지수</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10점 이상</td> <td>3</td> </tr> <tr> <td>B</td> <td>5점 이상 ~ 10점 미만</td> <td>2</td> </tr> <tr> <td>C</td> <td>3점 이상 ~ 5점 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 이상 ~ 10점 미만	2	C	3점 이상 ~ 5점 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점 이상	3													
B	5점 이상 ~ 10점 미만	2													
C	3점 이상 ~ 5점 미만	1													
최근 5년 이내 농업기술상용화 지원 일자리 창출 성과등급	<p>*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p> <p>정부출연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수 ※ 성과등급 지수 = 신규 일자리창출수 × 10억원 ÷ 정부출연금(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등급</th> <th>성과등급 지수</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100점 이상</td> <td>3</td> </tr> <tr> <td>B</td> <td>50점 이상 ~ 100점 미만</td> <td>2</td> </tr> <tr> <td>C</td> <td>30점 이상 ~ 50점 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p>* 지원 당해연도 실적이며, 취업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p>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 이상 ~ 100점 미만	2	C	30점 이상 ~ 50점 미만	1	3점 ~ 1점	
성과등급	성과등급 지수	가점													
A	100점 이상	3													
B	50점 이상 ~ 100점 미만	2													
C	30점 이상 ~ 50점 미만	1													

* 증빙서류 별첨

** 우대가점 해당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점은 불인정